

2018 년도 도쿄도 국공립고등학교 등 장학금 위한 급부금제도의 안내

- ※ 「취학 지원금」、 「급부형 장학금」 과는 제출기한·인정기준 등이 다릅니다.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장학을 위한 급부금」 을 신청하지 않는 분은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대상자

2018년 7월 1일 (기준일 ※7월 이후 입학한 경우 입학일) 시점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보호자

- (1)고등학교 취학 지원금 또는 재학습 지원금의 수급 자격이 있는 국공립 고등학생이 있을 것.
 - ※ 고교생이 아동 양호 시설 등에 입소 또는 양부모에게 위탁되어 조치비(전학 여행비 또는 특별 육성비)의 지급 대상인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2)생활 보호 수급 가구일 것.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도·도·부·현민세 소득 할액」 및 「구·시·정·촌민세 소득 할액」의 합산이 비과세(0엔)일 것.
- (3)보호자가 도쿄도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
 - ※ 보호자의 주소가 도쿄가 아닌 경우, 주소지의 도부현(道府県)교육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학생 본인이 도쿄도에 소재하지 않는 국공립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어도 보호자의 주소지가 도쿄도 내에 있는 경우 도쿄도 교육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확인 시트

※형제,자매등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일 현재, 보호자가 생활보호 (생업부조) 를 지원받고 있습니까?

아뇨

2018년도 보호자 전원의 「도·도·부·현민세 소득 할액」 및 「구·시·정·촌민세 소득할액」 합산이 비과세 (0엔)입니까?
 ※ 과세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과세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본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아뇨

대상이이 아

네

학생 본인은 통신제 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까?

아뇨

학생본인은 2018년 7월 1일 현재,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형제 자매 있습니까?
 A 고교생이 아닌 15세 (중학생 제외) 이상 23세 미만의 부양 받고 있는 형제자매
 B 고교생인 형제 자매 (공립·사립, 연령 등은 관계 없음)

네

아뇨

네(B)

아뇨

그 형제 자매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에 해당됩니까?
 · 학생 본인보다 연장자인 고등학생이다.
 · 통신제 과정에 재학중인 고교생이다.

네 (A)

네

아뇨

아뇨

「생활보호 (생업부조) 수급세대」의 급부액수입니다.

「비과세세대 · 통신제」의 급부액수입니다.

「비과세 세대 (제2 자녀) · 전일제/시간제」의 급부액수입니다.

「비과세 세대 (제1 자녀) · 전일제/시간제」의 급부액수입니다.

2. 급부액 (연 금액)

	전일제/시간제	통신제
생활보호 (생업보호) 수급 세대	32,300 엔	32,300 엔
비과세 세대 (제1 자녀)	80,800 엔	36,500 엔
비과세 세대 (제2 자녀 이후)	129,700 엔	

※ 지급된 금액은 상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 예정 시기는 2018년 12월입니다.

3. 필요서류

※ ☆표시가 되어있는 서류는 재학중인 도립학교의 경영기획실 또는 도교도 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18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 전원

- ①도교도 공립고등학교 등 장학을 위한 급부금 수급신청서 (☆)
- ②지불금 계좌이체 의뢰서 (☆) + 통장사본
(금융기관 코드·지점 코드·계좌번호·계좌명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 ③충당위임장 (☆) (도립고교 등에서 고교생에 관한 학교 징수금의 충당을 허락한 경우)

생활 보호(생업 부조)수급 세대의 경우

- ④생업 부조 수급 증명서 (☆)
 - 「생업 부조 수급」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는 복지 사무소가 발행한 생활 보호 수급 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와 관련 「수급 개시일」이 「2018년 7월 1일」 이전, 증명서의 발행일이 「2018년 7월 1일」 이후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세대 (제1 자녀 및 제2 자녀) ※필요 서류 중 취학 지원금 등의 신청으로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 본인이 도립학교에 통학하는 경우	학생 본인이 도립학교 이외에 통학하고 있는 경우
④ 마이넘버 수집대지 (☆: 도립학교 경영실에서만 배포)	다음 중 한가지의 보호자 전원 분 [2018년도 주민세 (비) 과세증명서 2018년도 특별징수 세액 통지서 2018년도 주민세 납세 통지서
⑤ 주민표의 복사본 또는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 보호자가 「주민이 된 날」이 「2018년 7월 1일」 이전, 증명서 발행일이 「2018년 7월 1일」 이후로 되어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고교생이 아닌, 15세 이상 23세 미만의 부양 받는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증이 국민건강 보험인 경우 부양신청서 (☆) 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⑦ (도립 이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서 제2 자녀로 신청을 하는 경우) 형제 자매가 다니는 고교의 재학 증명서	
⑧ (학생 본인의 보호자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해 가는 경우) 학생 본인의 건강 보험증 사본 건강보험증이 국민건강 보험인 경우 부양신청서 (☆) 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1 마이넘버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 마이넘버의 수집대상이 아닌 분의 주민표에 기재되어 있는 마이넘버는 판별할 수 없도록 처리 (검정 잉크 칩 등) 하 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시의 주의 사항

- (1) 취학 지원금 등의 신청으로 이미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다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취학 지원금 등의 신청으로 생업 부조 수급 증명서 및 주민표 복사, 또는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의 발행일이 「2018년 7월 1일」 이전의 것을 제출 한 경우, 이번 신청에서는 「2018년 7월 1일」 이후에 발행된 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2) 한번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원본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복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름이나 마이넘버 등의 글자를 선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사해 주십시오.
- (3) 친권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이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분의 소득은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분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은 불필요하므로 수속 절차상 친권자 또는 미성년 후견인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일시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아동상담소장, ②아동복지 시설의 장, ③법인인 미성년 후견인
④재산에 관한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미성년 후견인
- (4) 사정으로 인해 마이넘버 수집 대지를 제출하실 수 없는 분은 「마이넘버 수집 대지」 대신에 다음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시정촌민세 소득 할액 및 도도부현민세 소득 할액은 다음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2018년도 주민세 (비) 과세증명서, ②2018년도 특별징수 세액 통지서,
③2018년도 주민세 납세 통지서
- (5) 도립 고등학교 이외의 국공립 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경우, 도교도 국공립고등학교 등 장학을 위한 급부금 수급 신청서에 재학중인 학교의 교장으로부터 재학중이라는 증명 및 취학 지원금 또는 재학습 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증명(도장)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4. 도립학교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

2016년 1월 1일부터 마이넘버 제도(세금과 사회 보장의 개인 번호 제도)가 시작 되었습니다. 도립 고등학교 및 도립 중등교육학교에서는 2018년도부터 장학금 위한 급부금 관련 수속의 간편화를 위해 마이넘버에 의한 신청을 시작합니다.

■ 마이넘버를 이용했을 때 신청자의 이점

2017 년도까지

구청 등에서 과세 증명서를 취득한 후 이를 학교에 제출

2018 년도이후

보호자 등의 마이넘버 카드의 사본 등을 학교에 제출

구청 등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나 수수료가 필요 없습니다.

매년 1 회과세증명서 등을 취득한 후, 신청 (신고)를 해야 함.

신청할 때 제출 된 마이넘버를 이용하여 최신 과세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신청(신고)이 불필요.



다른 제도(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도쿄 도립학교 등 급부형 장학금 등)신청 시 이미 마이넘버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 마이넘버의 사본을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마이넘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개인번호 통지 카드



(2) 개인번호 (마이넘버) 카드의 뒷면



(3) 개인번호 (마이넘버) 기재 된 주민표

주소지의 구·시청, 정·촌 사무소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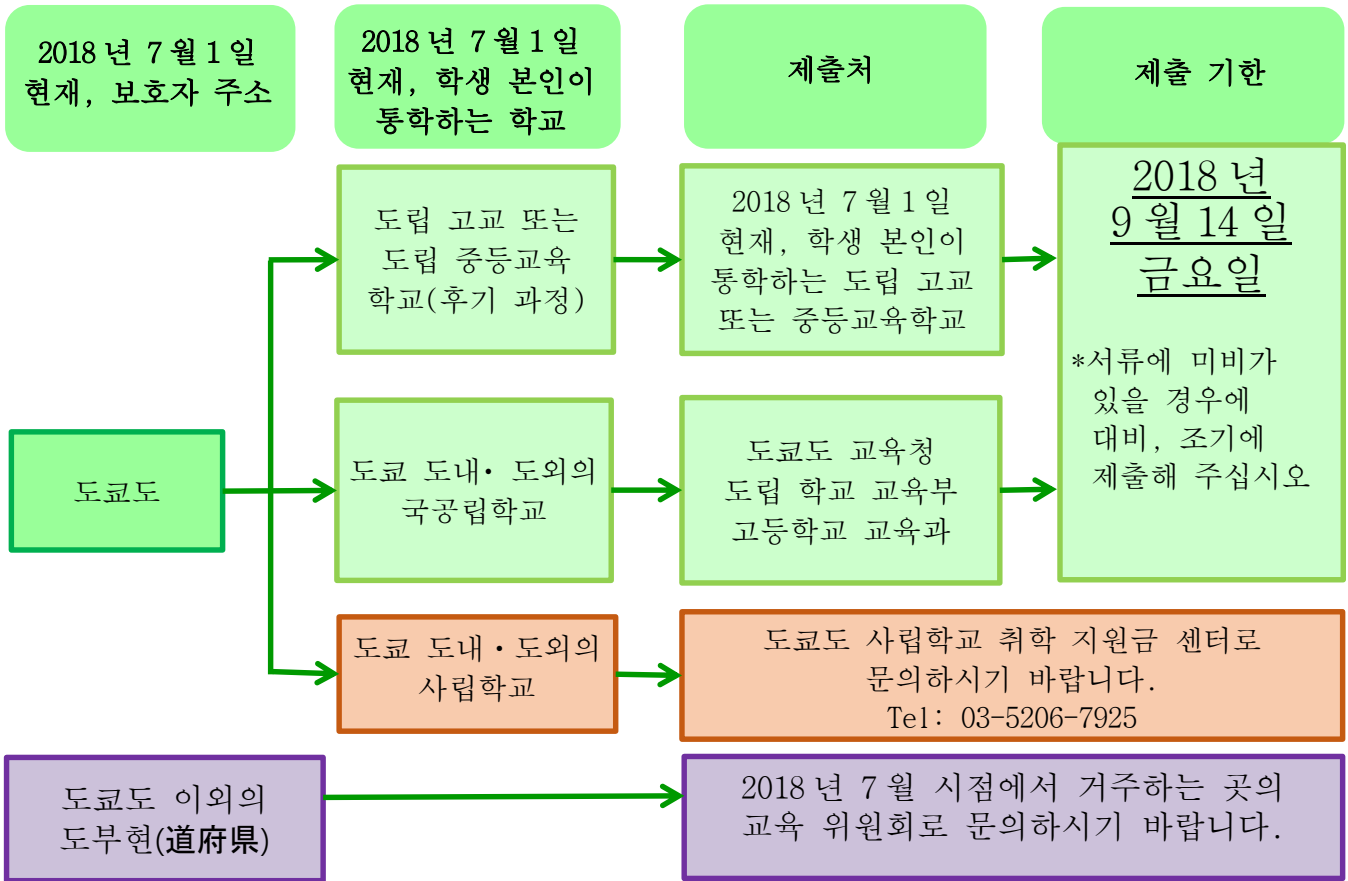
이 제도에 있어서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수집하는 학생이나 보호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또한 장학금 위한 급부금에 관한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위탁 업체에 대해 필요하며 적절한 감독을 실시합니다. 제출해 주신 마이넘버는 다른 취학 지원사업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 도쿄도립학교 등 급부형 장학금, 도쿄도립학교 등 재학습 지원금)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 마이넘버를 이용하여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과세정보에 관한 것만입니다.

생업 부조 수급 증명서, 생활 보호 수급 증명서, 주민표 및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구청 등에서 취득하셔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기한 · 제출처 등

보호자의 주소 및 학생 본인이 통학하는 학교에 따라 제출기한 및 제출처가 다르므로 주의하십시오.



6. 자주 있는 질문

Q1: 해외에 부임 중이라서 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습니다. 취학 지원금은 지급되고 있는데 장학금을 위한 급부금도 받을 수 있습니까?

A1: 장학금을 위한 급부금은 보호자 전원의 주소가 일본 국내에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해외에 부임중 등의 이유로 보호자 중 어느 한 쪽의 주소라도 국내에 없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2: 7월 1일 이후, 전학(자퇴) 했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또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전학하는 학교에 제출하면 됩니까?

A2: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1일 이후에 자퇴한 경우는 다니던 학교에, 7월 1일 이후에 전학한 경우는 전학하기 전의 학교에 각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3: 아버지가 단신 부임으로 다른 현에 살고 계십니다. 신청은 도쿄에서 해도 괜찮습니까?

A3: 도쿄도가 생활의 본거지인 경우는 도쿄에 신청하십시오. 하지만 단신 부임의 지역에 이미 신청하신 경우는 도쿄도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7. 문의처

▶ 학생 본인이 도립 고등학교 또는 도립 중등 교육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세대
학생 본인이 재학중인 고등학교 등의 경영기획실

▶ 학생 본인이 도립 고등학교 이외의 국공립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세대

T 163-8001

도쿄도 신주쿠 구 니시 신주쿠 2초메 8번 1호 도쿄 도청 제일 본청사 북쪽 39층

도쿄도 교육청 도립학교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 경리 담당

Tel.: 03-5320-7862 (평일 9:00 ~ 17:00)